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67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 이상훈 의원(1명)
찬 성 자 : 권영희, 김기대, 김기덕,
김정태, 김제리, 김종무,
김태수, 김평남,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송도호, 양민규, 이성배,
이정인, 임종국,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20명)

1. 제안이유

- 호수밀도는 1헥타르 당 건축물의 밀집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다세대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세대수를 호수로 산정하고 있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건축물의 규모, 거주형태가 다세대주택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거주 가구 수와 관계없이 건축물 1동을 1호로 산정하고 있어,
호수밀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가구주택 호수밀도 산정 방법을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다가구 호수밀도 산정 시 거주 가구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가구수를 1동으로 산정함(안 제2조제5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가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하고,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을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세대
(다가구주택은 가구. 이하 이목에서는 같다)수가 가장 많은 층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을 “다세대
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5.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p> <p>가. <u>공동주택</u>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u>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1동으로 보며, 나머지 층의 세대수는 계상하지 않는다.</u></p> <p>나~마. (생략)</p> <p>라. <u>단독 또는 다가구주택</u>을 건축물 준공 후 <u>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u></p> <p>바. (생략)</p>	<p>제2조(정의)</p> <p>①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가. <u>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u>----- -----<u>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세대(다가구주택은 가구, 이하 이 목에서는 같다)수가 가장 많은 층의</u>-----.</p> <p>나~마. (현행과 같음)</p> <p>라. <u>단독주택</u>----- ----- <u>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u>----- -----.</p> <p>바. (현행과 같음)</p>